

2021년 신청

정부혁신
보다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Contents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및 금액 현황

4

2

근로·자녀장려세제 개요

6

- ① 근로·자녀장려세제 개념
- ② 도입배경 및 연혁
- ③ 기대효과

3

적용대상 및 단위

8

- ① 적용대상
- ② 적용단위

4

장려금 신청자격

10

- ① 가구원
- ②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③ 재산요건
- ④ 기타사항

5

장려금 산정

16

- ① 장려금 산정 모형
- ②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의 계산
- ③ 장려금 산정

일하는 즐거움 쌓이는 행복*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6

장려금 신청 및 지급

19

- ① 신청 시 제출서류
- ② 신청기간
- ③ 신청방법
- ④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24

-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② 혼위 신청 시 불이익
- ③ 사업자등록 시 사회보험료
- ④ 불복절차

8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26

- ① 신청자격
- ② 지급 및 정산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별표 11의 2. 자녀장려금 산정표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및 금액 현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가구



금액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가구	59	57	52	75	78	85	236 (171)	238 (188)	272 (225)	273 (230)	498 (433)	506 (450)	2,429 (1,697)
금액	4.5	4.4	4.0	6.1	5.6	7.7	17.1	16.3	17.6	18.3	52.6	51.1	205.3

* 귀속연도 기준이며 ()안은 근로·자녀장려금 중복가구를 제외한 순가구

2 근로·자녀장려세제 개요

1 근로·자녀장려세제 개념

2 도입배경 및 연혁

3 기대효과



1 근로·자녀장려세제 개념

1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일정 수준까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증가하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하고자 하는 근로 유인기능 내재

2 자녀장려세제(CTC : Child Tax Credit)

-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도입배경 및 연혁

-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양극화 등으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2009년에 근로장려금을 처음 지급한 이후 2015년에 자녀장려금 도입, 2019년에는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재산·소득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하는 등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확대해 왔으며, 지급주기를 단축해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 지급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많아져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에 소득세 환급의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1 적용대상

- 2009년 최초 지급 때는 소득파악이 용이한 근로소득자, 2012년에는 자영업자 중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 추가되었고, 2015년에는 모든 자영업자(전문직*은 제외)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종교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2 적용단위

-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총급여액 등"이라 함)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3 적용대상 및 단위

1 적용대상

2 적용단위



장려금 신청자격

- 1** 가구원
-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3** 재산요건
- 4** 기타사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개요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 2020.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별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 ✓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기타사항

-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일 것
-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1 가구원

▣ 부양자녀의 범위

-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자를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기준

- 18세 미만(2002. 1. 2.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 부양자녀의 생계기준

-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부양자녀의 판정시기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에 포함

▣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 순서

-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직계존속 기준

- 70세 이상(1950. 12. 31.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

-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해당없음	
홀별이가구	3,000만원 미만	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 7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최소 50만원)	

▣ 합산대상 총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14쪽 참고)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임·어업, 광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3 재산요건

- 2020.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은 공공기관 보유 자료에 의해 재산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재산으로 한정합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 한정),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 보험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 기구의 금융재산·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 회사채 등
 -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4 기타사항

▣ 신청제한

- 위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제한 요약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신청×	신청×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신청×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	신청×

▣ 소득세 공제세액 감액(중복적용 배제)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장려금 산정

1 장려금 산정 모형

2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의 계산

3 장려금 산정

5

1 장려금 산정 모형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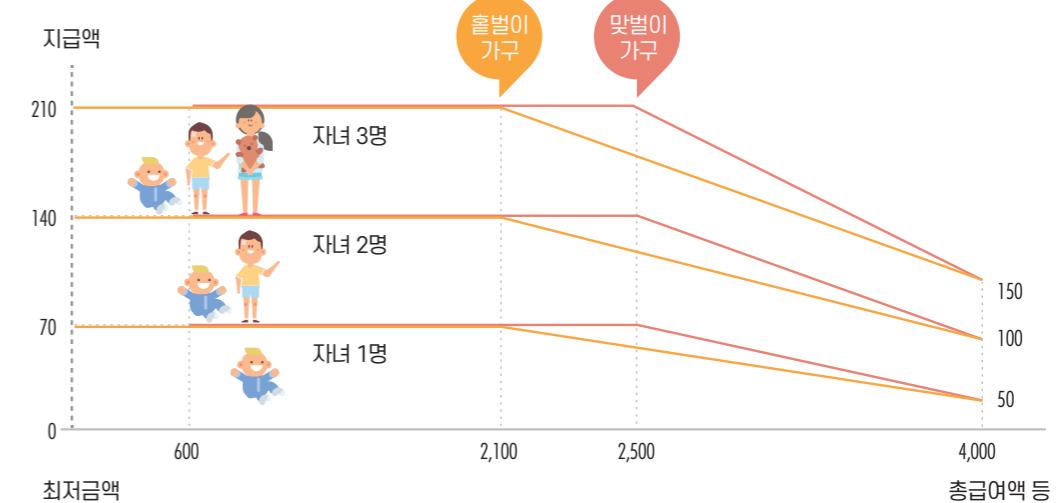
근로장려금

(단위 : 만원)



자녀장려금

(단위 : 만원)



2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의 계산

-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더해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준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3 장려금 산정

- 신청인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붙임 참조)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고 감액요인(아래표 참조)을 반영하여 차감합니다.

감액 요인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음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장려금 계산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

(☞ 흄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 미리보기/계산해보기 → 미리보기)

6

장려금 신청 및 지급

① 신청 시 제출서류

② 신청기간

③ 신청방법

④ 지급



1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2 신청기간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전자신청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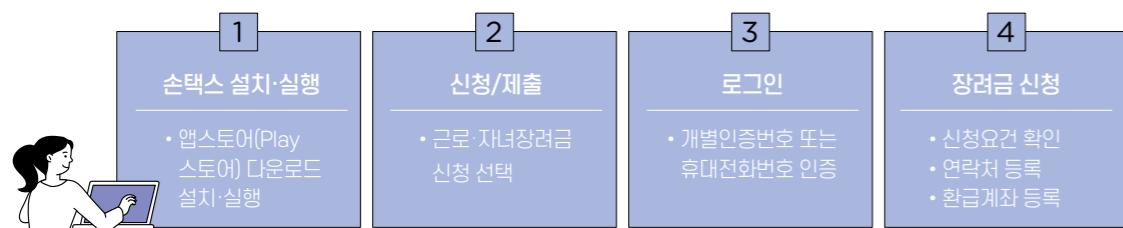
이용시간 06~24시

1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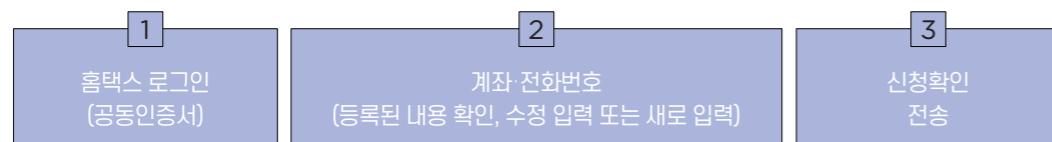
2 모바일 신청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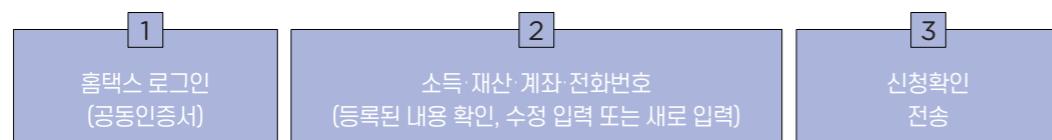


3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4 신청도움 서비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4 지급

-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예정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1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2 모바일 앱 조회

-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인터넷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기타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허위 신청 시 불이익

3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4 불복절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2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 : 2년간 지급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 : 5년간 지급제한
 - 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제외)

3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소득금액 등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4 불복절차

-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규정이 적용됩니다.
- 불복청구 절차
 - 청구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 불복청구 대상 : 지급제외 결정,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
 -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8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1 신청자격

2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안내

1 신청자격

-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 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11쪽 참조)이고, 해당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 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년 하반기 소득분	'21.3.1. ~ '21.3.15.	'21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년 귀속분 정산		'21년 9월 말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21년 상반기 소득분	'21.9.1. ~ '21.9.15.	'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70,000	27,000	27,000	해당없음	2,700,000	2,800,000	1,050,000	1,050,000	해당없음
70,000	100,000	38,000	38,000	해당없음	2,800,000	2,900,000	1,088,000	1,088,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75,000	75,000	해당없음	2,900,000	3,000,000	1,125,000	1,125,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13,000	113,000	해당없음	3,000,000	3,100,000	1,163,000	1,163,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50,000	150,000	해당없음	3,100,000	3,200,000	1,200,000	1,200,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188,000	188,000	해당없음	3,200,000	3,300,000	1,238,000	1,238,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25,000	225,000	해당없음	3,300,000	3,400,000	1,275,000	1,275,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63,000	263,000	해당없음	3,400,000	3,500,000	1,313,000	1,313,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00,000	300,000	해당없음	3,500,000	3,600,000	1,350,000	1,350,000	해당없음
800,000	900,000	338,000	338,000	해당없음	3,600,000	3,700,000	1,388,000	1,388,000	해당없음
900,000	1,000,000	375,000	375,000	해당없음	3,700,000	3,800,000	1,425,000	1,425,000	해당없음
1,000,000	1,100,000	413,000	413,000	해당없음	3,800,000	3,900,000	1,463,000	1,463,000	해당없음
1,100,000	1,200,000	450,000	450,000	해당없음	3,900,000	4,000,000	1,500,000	1,500,000	해당없음
1,200,000	1,300,000	488,000	488,000	해당없음	4,000,000	4,100,000	1,500,000	1,523,000	해당없음
1,300,000	1,400,000	525,000	525,000	해당없음	4,100,000	4,200,000	1,500,000	1,560,000	해당없음
1,400,000	1,500,000	563,000	563,000	해당없음	4,200,000	4,300,000	1,500,000	1,598,000	해당없음
1,500,000	1,600,000	600,000	600,000	해당없음	4,300,000	4,400,000	1,500,000	1,635,000	해당없음
1,600,000	1,700,000	638,000	638,000	해당없음	4,400,000	4,500,000	1,500,000	1,672,000	해당없음
1,700,000	1,800,000	675,000	675,000	해당없음	4,500,000	4,600,000	1,500,000	1,709,000	해당없음
1,800,000	1,900,000	713,000	713,000	해당없음	4,600,000	4,700,000	1,500,000	1,746,000	해당없음
1,900,000	2,000,000	750,000	750,000	해당없음	4,700,000	4,800,000	1,500,000	1,783,000	해당없음
2,000,000	2,100,000	788,000	788,000	해당없음	4,800,000	4,900,000	1,500,000	1,820,000	해당없음
2,100,000	2,200,000	825,000	825,000	해당없음	4,900,000	5,000,000	1,500,000	1,858,000	해당없음
2,200,000	2,300,000	863,000	863,000	해당없음	5,000,000	5,100,000	1,500,000	1,895,000	해당없음
2,300,000	2,400,000	900,000	900,000	해당없음	5,100,000	5,200,000	1,500,000	1,932,000	해당없음
2,400,000	2,500,000	938,000	938,000	해당없음	5,200,000	5,300,000	1,500,000	1,969,000	해당없음
2,500,000	2,600,000	975,000	975,000	해당없음	5,300,000	5,400,000	1,500,000	2,006,000	해당없음
2,600,000	2,700,000	1,013,000	1,013,000	해당없음	5,400,000	5,500,000	1,500,000	2,043,000	해당없음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5,500,000	5,600,000	1,500,000	2,080,000	해당없음	5,600,000	5,700,000	1,500,000	2,118,000	해당없음
5,700,000	5,800,000	1,500,000	2,155,000	해당없음	5,800,000	5,900,000	1,500,000	2,192,000	해당없음
5,900,000	6,000,000	1,500,000	2,229,000	해당없음	6,000,000	6,100,000	1,500,000	2,266,000	2,288,000
6,100,000	6,200,000	1,500,000	2,303,000	2,325,000	6,200,000	6,300,000	1,500,000	2,340,000	2,363,000
6,300,000	6,400,000	1,500,000	2,378,000	2,400,000	6,400,000	6,500,000	1,500,000	2,415,000	2,438,000
6,500,000	6,600,000	1,500,000	2,452,000	2,475,000	6,600,000	6,700,000	1,500,000	2,489,000	2,513,000
6,700,000	6,800,000	1,500,000	2,526,000	2,550,000	6,800,000	6,900,000	1,500,000	2,563,000	2,588,000
6,900,000	7,000,000	1,500,000	2,600,000	2,625,000	7,000,000	7,100,000	1,500,000	2,600,000	2,663,000
7,100,000	7,200,000	1,500,000	2,600,000	2,700,000	7,200,000	7,300,000	1,500,000	2,600,000	2,738,000
7,300,000	7,400,000	1,500,000	2,600,000	2,775,000	7,400,000	7,500,000	1,500,000	2,600,000	2,813,000
7,500,000	7,600,000	1,500,000	2,600,000	2,850,000	7,600,000	7,700,000	1,500,000	2,600,000	2,888,000
7,700,000	7,800,000	1,500,000	2,600,000	2,925,000	7,800,000	7,900,000	1,500,000	2,600,000	2,963,000
7,900,000	8,0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000,000	8,1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100,000	8,2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200,000	8,3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300,000	8,4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400,000	8,5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500,000	8,6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8,600,000	8,700,000	1,500,000	2,600,000	3,000,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벌이가구
11,900,000	12,000,000	1,105,000	2,600,000	3,000,000
12,000,000	12,100,000	1,091,000	2,600,000	3,000,000
12,100,000	12,200,000	1,078,000	2,600,000	3,000,000
12,200,000	12,300,000	1,064,000	2,600,000	3,000,000
12,300,000	12,400,000	1,050,000	2,600,000	3,000,000
12,400,000	12,500,000	1,037,000	2,600,000	3,000,000
12,500,000	12,600,000	1,023,000	2,600,000	3,000,000
12,600,000	12,700,000	1,010,000	2,600,000	3,000,000
12,700,000	12,800,000	996,000	2,600,000	3,000,000
12,800,000	12,900,000	982,000	2,600,000	3,000,000
12,900,000	13,000,000	969,000	2,600,000	3,000,000
13,000,000	13,100,000	955,000	2,600,000	3,000,000
13,100,000	13,200,000	941,000	2,600,000	3,000,000
13,200,000	13,300,000	928,000	2,600,000	3,000,000
13,300,000	13,400,000	914,000	2,600,000	3,000,000
13,400,000	13,500,000	900,000	2,600,000	3,000,000
13,500,000	13,600,000	887,000	2,600,000	3,000,000
13,600,000	13,700,000	873,000	2,600,000	3,000,000
13,700,000	13,800,000	860,000	2,600,000	3,000,000
13,800,000	13,900,000	846,000	2,600,000	3,000,000
13,900,000	14,000,000	832,000	2,600,000	3,000,000
14,000,000	14,100,000	819,000	2,600,000	3,000,000
14,100,000	14,200,000	805,000	2,584,000	3,000,000
14,200,000	14,300,000	791,000	2,568,000	3,000,000
14,300,000	14,400,000	778,000	2,552,000	3,000,000
14,400,000	14,500,000	764,000	2,535,000	3,000,000
14,500,000	14,600,000	750,000	2,519,000	3,000,000
14,600,000	14,700,000	737,000	2,503,000	3,000,000
14,700,000	14,800,000	723,000	2,487,000	3,000,000
14,800,000	14,900,000	710,000	2,470,000	3,000,000
14,900,000	15,000,000	696,000	2,454,000	3,000,000
15,000,000	15,100,000	682,000	2,438,000	3,000,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벌이가구
15,100,000	15,200,000	669,000	2,422,000	3,000,000
15,200,000	15,300,000	655,000	2,405,000	3,000,000
15,300,000	15,400,000	641,000	2,389,000	3,000,000
15,400,000	15,500,000	628,000	2,373,000	3,000,000
15,500,000	15,600,000	614,000	2,357,000	3,000,000
15,600,000	15,700,000	600,000	2,340,000	3,000,000
15,700,000	15,800,000	587,000	2,324,000	3,000,000
15,800,000	15,900,000	573,000	2,308,000	3,000,000
15,900,000	16,000,000	560,000	2,292,000	3,000,000
16,000,000	16,100,000	546,000	2,275,000	3,000,000
16,100,000	16,200,000	532,000	2,259,000	3,000,000
16,200,000	16,300,000	519,000	2,243,000	3,000,000
16,300,000	16,400,000	505,000	2,227,000	3,000,000
16,400,000	16,500,000	491,000	2,210,000	3,000,000
16,500,000	16,600,000	478,000	2,194,000	3,000,000
16,600,000	16,700,000	464,000	2,178,000	3,000,000
16,700,000	16,800,000	450,000	2,162,000	3,000,000
16,800,000	16,900,000	437,000	2,145,000	3,000,000
16,900,000	17,000,000	423,000	2,129,000	3,000,000
17,000,000	17,100,000	410,000	2,113,000	3,000,000
17,100,000	17,200,000	396,000	2,097,000	2,985,000
17,200,000	17,300,000	382,000	2,080,000	2,969,000
17,300,000	17,400,000	369,000	2,064,000	2,953,000
17,400,000	17,500,000	355,000	2,048,000	2,937,000
17,500,000	17,600,000	341,000	2,032,000	2,922,000
17,600,000	17,700,000	328,000	2,015,000	2,906,000
17,700,000	17,800,000	314,000	1,999,000	2,890,000
17,800,000	17,900,000	300,000	1,983,000	2,874,000
17,900,000	18,000,000	287,000	1,967,000	2,858,000
18,000,000	18,100,000	273,000	1,950,000	2,843,000
18,100,000	18,200,000	260,000	1,934,000	2,827,000
18,200,000	18,300,000	246,000	1,918,000	2,811,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벌이가구
18,300,000	18,400,000	232,000	1,902,000	2,795,000
18,400,000	18,500,000	219,000	1,885,000	2,779,000
18,500,000	18,600,000	205,000	1,869,000	2,764,000
18,600,000	18,700,000	191,000	1,853,000	2,748,000
18,700,000	18,800,000	178,000	1,837,000	2,732,000
18,800,000	18,900,000	164,000	1,820,000	2,716,000
18,900,000	19,000,000	150,000	1,804,000	2,700,000
19,000,000	19,100,000	137,000	1,788,000	2,685,000
19,100,000	19,200,000	123,000	1,772,000	2,669,000
19,200,000	19,300,000	110,000	1,755,000	2,653,000
19,300,000	19,400,000	96,000	1,739,000	2,637,000
19,400,000	19,500,000	82,000	1,723,000	2,622,000
19,500,000	19,600,000	69,000	1,707,000	2,606,000
19,600,000	19,700,000	55,000	1,690,000	2,590,000
19,700,000	19,780,000	41,000	1,674,000	2,574,000
19,780,000	19,800,000	30,000	1,674,000	2,574,000
19,800,000	19,890,100	28,000	1,658,000	2,558,000
19,890,100	19,900,000	-	1,658,000	2,558,000
19,900,000	20,000,000	-	1,642,000	2,543,000
20,000,000	20,100,000	-	1,625,000	2,527,000
20,100,000	20,200,000	-	1,609,000	2,511,000
20,200,000	20,300,000	-	1,593,000	2,495,000
20,300,000	20,400,000	-	1,577,000	2,479,000
20,400,000	20,500,000	-	1,560,000	2,464,000
20,500,000	20,600,000	-	1,544,000	2,448,000
20,600,000	20,700,000	-	1,528,000	2,432,000
20,700,000	20,800,000	-	1,512,000	2,416,000
20,800,000	20,900,000	-	1,495,000	2,400,000
20,900,000	21,000,000	-	1,479,000	2,385,000
21,000,000	21,100,000	-	1,463,000	2,369,000
21,100,000	21,200,000	-	1,447,000	2,353,000
21,200,000	21,300,000	-	1,430,000	2,337,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별이가구	맞벌이가구

</tbl_r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4,500,000	24,600,000	-	894,000	1,816,000	27,700,000	27,800,000	-	374,000	1,311,000
24,600,000	24,700,000	-	878,000	1,800,000	27,800,000	27,900,000	-	358,000	1,295,000
24,700,000	24,800,000	-	862,000	1,785,000	27,900,000	28,000,000	-	342,000	1,279,000
24,800,000	24,900,000	-	845,000	1,769,000	28,000,000	28,100,000	-	325,000	1,264,000
24,900,000	25,000,000	-	829,000	1,753,000	28,100,000	28,200,000	-	309,000	1,248,000
25,000,000	25,100,000	-	813,000	1,737,000	28,200,000	28,300,000	-	293,000	1,232,000
25,100,000	25,200,000	-	797,000	1,722,000	28,300,000	28,400,000	-	277,000	1,216,000
25,200,000	25,300,000	-	780,000	1,706,000	28,400,000	28,500,000	-	260,000	1,200,000
25,300,000	25,400,000	-	764,000	1,690,000	28,500,000	28,600,000	-	244,000	1,185,000
25,400,000	25,500,000	-	748,000	1,674,000	28,600,000	28,700,000	-	228,000	1,169,000
25,500,000	25,600,000	-	732,000	1,658,000	28,700,000	28,800,000	-	212,000	1,153,000
25,600,000	25,700,000	-	715,000	1,643,000	28,800,000	28,900,000	-	195,000	1,137,000
25,700,000	25,800,000	-	699,000	1,627,000	28,900,000	29,000,000	-	179,000	1,122,000
25,800,000	25,900,000	-	683,000	1,611,000	29,000,000	29,100,000	-	163,000	1,106,000
25,900,000	26,000,000	-	667,000	1,595,000	29,100,000	29,200,000	-	147,000	1,090,000
26,000,000	26,100,000	-	650,000	1,579,000	29,200,000	29,300,000	-	130,000	1,074,000
26,100,000	26,200,000	-	634,000	1,564,000	29,300,000	29,400,000	-	114,000	1,058,000
26,200,000	26,300,000	-	618,000	1,548,000	29,400,000	29,500,000	-	98,000	1,043,000
26,300,000	26,400,000	-	602,000	1,532,000	29,500,000	29,600,000	-	82,000	1,027,000
26,400,000	26,500,000	-	585,000	1,516,000	29,600,000	29,700,000	-	65,000	1,011,000
26,500,000	26,600,000	-	569,000	1,500,000	29,700,000	29,800,000	-	49,000	995,000
26,600,000	26,700,000	-	553,000	1,485,000	29,800,000	29,815,390	-	33,000	979,000
26,700,000	26,800,000	-	537,000	1,469,000	29,815,390	29,900,000	-	30,000	979,000
26,800,000	26,900,000	-	520,000	1,453,000	29,900,000	29,907,800	-	17,000	964,000
26,900,000	27,000,000	-	504,000	1,437,000	29,907,800	30,000,000	-	-	964,000
27,000,000	27,100,000	-	488,000	1,422,000	30,000,000	30,100,000	-	-	948,000
27,100,000	27,200,000	-	472,000	1,406,000	30,100,000	30,200,000	-	-	932,000
27,200,000	27,300,000	-	455,000	1,390,000	30,200,000	30,300,000	-	-	916,000
27,300,000	27,400,000	-	439,000	1,374,000	30,300,000	30,400,000	-	-	900,000
27,400,000	27,500,000	-	423,000	1,358,000	30,400,000	30,500,000	-	-	885,000
27,500,000	27,600,000	-	407,000	1,343,000	30,500,000	30,600,000	-	-	869,000
27,600,000	27,700,000	-	390,000	1,327,000	30,600,000	30,700,000	-	-	853,000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0,700,000	30,800,000	-	-	837,000	33,400,000	33,500,000	-	-	411,000
30,800,000	30,900,000	-	-	822,000	33,500,000	33,600,000	-	-	395,000
30,900,000	31,000,000	-	-	806,000	33,600,000	33,700,000	-	-	379,000
31,000,000	31,100,000	-	-	790,000	33,700,000	33,800,000	-	-	364,000
31,100,000	31,200,000	-	-	774,000	33,800,000	33,900,000	-	-	348,000
31,200,000	31,300,000	-	-	758,000	33,900,000	34,000,000	-	-	332,000
31,300,000	31,400,000	-	-	743,000	34,000,000	34,100,000	-	-	316,000
31,400,000	31,500,000	-	-	727,000	34,100,000	34,200,000	-	-	300,000
31,500,000	31,600,000	-	-	711,000	34,200,000	34,300,000	-	-	285,000
31,600,000	31,700,000	-	-	695,000	34,300,000	34,400,000	-	-	269,000
31,700,000	31,800,000	-	-	679,000	34,400,000	34,500,000	-	-	253,000
31,800,000	31,900,000	-	-	664,000	34,500,000	34,600,000	-	-	237,000
31,900,000	32,000,000	-	-	648,000	34,600,000	34,700,000	-	-	222,000
32,000,000	32,100,000	-	-	632,000	34,700,000	34,800,000	-	-	206,000
32,100,000	32,200,000	-	-	616,000	34,800,000	34,900,000	-	-	190,000
32,200,000	32,300,000	-	-	600,000	34,900,000	35,000,000	-	-	174,000
32,300,000	32,400,000	-	-	585,000	35,000,000	35,100,000	-	-	158,000
32,400,000	32,500,000	-	-	569,000	35,100,000	35,200,000	-	-	143,000
32,500,000	32,600,000	-	-	553,000	35,200,000	35,300,000	-	-	127,000
32,600,000	32,700,000	-	-	537,000	35,300,000	35,400,000	-	-	111,000
32,700,000	32,800,000	-	-	522,000	35,400,000	35,500,000	-	-	95,000
32,800,000	32,900,000	-	-	506,000	35,500,000	35,600,000	-	-	79,000
32,900,000	33,000,000	-	-	490,000	35,600,000	35,700,000	-	-	64,000
33,000,000	33,100,000	-	-	474,000	35,700,000	35,800,000	-	-	48,000
33,100,000	33,200,000	-	-	458,000	35,800,000	35,810,000	-	-	32,000
33,200,000	33,300,000	-	-	443,000	35,810,000	35,905,100	-	-	30,000
33,300,000	33,400,000	-	-	427,000					

비고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 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1의 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상	미만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30,000,000	30,500,000	606,000	634,000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30,500,000	31,000,000	600,000	627,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31,000,000	31,500,000	595,000	62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31,500,000	32,000,000	590,000	614,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32,000,000	32,500,000	585,000	607,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32,500,000	33,000,000	579,000	6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33,000,000	33,500,000	574,000	594,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33,500,000	34,000,000	569,000	587,000
24,000,000	24,500,000	669,000	700,000	34,000,000	34,500,000	564,000	580,000
24,500,000	25,000,000	664,000	700,000	34,500,000	35,000,000	558,000	574,000
25,000,000	25,500,000	658,000	700,000	35,000,000	35,500,000	553,000	567,000
25,500,000	26,000,000	653,000	694,000	35,500,000	36,000,000	548,000	560,000
26,000,000	26,500,000	648,000	687,000	36,000,000	36,500,000	543,000	554,000
26,500,000	27,000,000	643,000	680,000	36,500,000	37,000,000	537,000	547,000
27,000,000	27,500,000	637,000	674,000	37,000,000	37,500,000	532,000	540,000
27,500,000	28,000,000	632,000	667,000	37,500,000	38,000,000	527,000	534,000
28,000,000	28,500,000	627,000	660,000	38,000,000	38,500,000	522,000	527,000
28,500,000	29,000,000	622,000	654,000	38,500,000	39,000,000	516,000	520,000
29,000,000	29,500,000	616,000	647,000	39,000,000	39,500,000	511,000	514,000
29,500,000	30,000,000	611,000	640,000	39,500,000	39,999,990	506,000	507,000

비고

1.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1년 신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발행일 2021년 4월

발행처 국세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편집 소득지원국 | 044-204-3823

제작 전우용사촌(주) | 02-426-4415